

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

1 기본 현황

□ 사업개요

회 계	소방안전특별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병원 이송 전 구급서비스 전문성 강화 ○ 구급상황관리사(의료상담 및 병원 안내) 인건비 및 운영비 등		
사업비 (당해년도)	892,074천원	(국비)446,037천원	(사비)446,037천원
		기타 (예산 외) (국비)	(기타)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소방재난본부	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	한정희 726-2301	이대우 726-2050	오선화 726-2051

2 예산 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7예산액 (A)	2018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506,030) 1,012,060	(x446,037) 892,074	(x△59,993) △119,986	(x△11) △11
기간제근로자등보수	(x506,030) 1,012,060	(x446,037) 892,074	(x△59,993) △119,986	(x△11) △11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18년 예산내역	
기간제근로자등보수	○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155,694,000원	= 155,694천원
	○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인건비 736,380,000원	= 736,380천원

3 사업 설명

- 사업목적
 - 응급환자의 적정병원 선정을 통한 병원 전단계 조치 시간 단축
 - 구급품질관리 평가 모니터링을 통해 응급처치, 환자이송 등 질 향상 도모
 -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낮추고 선진화된 복지사회 구축에 이바지 하고자 함

- 사업근거
 - 법령상 근거
 -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(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운영)
 -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(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)
 -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(국민안전처훈령 제65호)
 - 서울특별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규칙(서울특별시규칙 제3963호)
 -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(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) 및 제13조(지방비 부담 의무)

- 사업내용
 - 사업기간 : 2018. 1 ~ 2018.12
 - 사업내용 :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
 - 총사업비 : 892,074천원

- 추진경위
 - 구급 관련 재난 발생(전염병 등)시 상담전화 폭주를 대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
 - 응급환자 이송 뿐만 아니라 질병 및 의료 상담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대두

□ 2018년도 추진일정 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892,074	
구급상황관리사	2018.01~2018.12	892,074	매월 급여지급 및 운영비 지급 등

4 사업 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5년도	○ 상황실 구급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개인별 지도의사 평가 ○ 중증환자 다중출동에 따른 병원선정 및 이송병원 환자정보 제공
2016년도	○ 상황실 구급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개인별 지도의사 평가 ○ 중증환자 다중출동에 따른 병원선정 및 이송병원 환자정보 제공
2017년도	○ 상황실 구급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개인별 지도의사 평가 ○ 중증환자 다중출동에 따른 병원선정 및 이송병원 환자정보 제공

□ 향후 기대효과

-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단일화를 통한 양질의 정보를 신속히 제공
-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 만족도 향상

5 최근 3년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당초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6	(x559,570) 1,140,840	(x-) 0	(x-) 0	(x559,570) 1,140,840	(x542,022) 1,087,718	(x-) 0	(x17,548) 53,122